

금융기관 공동 제로페이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1. 개정 내용

개정전	개정(안)	비고
금융기관 공동 제로페이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 제16조 <생 략> 제17조 (손해배상 및 면책사항) ① (생 략) ② “은행”이 제공하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하는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 ④ (생 략) 제18조 ~ 제24조 <생 략> 부칙 제1조 <생 략>	금융기관 공동 제로페이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 제16조 <좌 동> 제17조 (손해배상 및 면책사항) ① (좌 동) ② “은행”이 제공하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하는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 ④ (좌 동) 제18조 ~ 제24조 <좌 동> 부칙 제1조 <좌 동>	전자금융거래 사고유형추가

2.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적용